

'23.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확정신고 요약

- (신고개요) '23년 12월말 결산법인은 4. 1.(월)*까지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3. 1.(금)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. 참고 1
 - * 올해는 3월 31일(일)이 휴일이므로 4. 1.(월)까지 신고
 - (건설·제조업 등 세정지원)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·제조·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. 참고 2
 -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(월)에서 7월 1일(월)로 3개월 연장하고,
 -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,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(수)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(목)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.
 - 한편, 건설·제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.
 - (신고도움자료)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,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·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. 참고 3
 - 기업이 공제·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,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.
 -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,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- 홈택스 「신고도움서비스」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- (불성실 신고법인 검증)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, 공제·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. 참고 4

**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,
'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'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도움자료를
참고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